

반도핑 규정에 대하여

강의에서 취급하는 내용

- 11 가지 반도핑 규정위반들과 처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11 가지 반도핑 규정위반이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 규정을 준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규정이 깨끗한 체육을 위한 품성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강의 목적

- 11 가지 반도핑 규정위반행위들과 그 적용대상, 해당 처벌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11 가지 반도핑 규정위반조항들이 선수와 깨끗한 체육을 어떻게 보호하는가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반도핑 규정위반사건을 해석하고 견해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강의 대상

- 선수
- 선수보장성원들

제 1 과

규정의 필요성

- 규정은 체육의 기초이다. 체육에 규정이 있어야 다같이 공정한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 반도핑 규정은 선수의 경기 능력을 지켜주며 우리는 꾸밈없는 진실한 경기를 볼 수 있다.

체육 경기에 즐겁게 참가하려면 선수에게는 성공과 도전의 기회를 주는 체육 경기 환경이 필요하며 경기 진행의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반도핑 규정은 선수들의 안전과 체육 경기의 공정성을 보장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즐거움을 느끼도록 해준다.

이 모든 것이 깨끗한 체육과 일관되어 있다.

깨끗한 체육은 기쁨과 즐거움, 공정한 경기와 명예, 건강과 규정의식과 같은 품성을 키워준다. 그러므로 반도핑 규정과 같은 체육의 법 규정들을 준수함으로써 선수는 깨끗한 체육에 부합되는 품성을 발휘하게 된다.

제 2 과

반도핑 규정

세계반도핑규약에서는 도핑을 한가지 이상의 반도핑 규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음의 경우들에 반도핑 규정 위반행위로 될 수 있다.

- 존재

선수가 검사양성으로 되는 경우이다.

규약의 내용에 따라 선수의 시료속에 금지물질이나 대사체, 표식자가 존재하면 반도핑 규정 위반으로 될 수 있다.

금지물질이 일반약품이나 영양보충제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사용

선수가 금지물질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경우이다.

규약의 내용에 따라 선수가 금지물질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거나 사용을 시도하는 경우 반도핑 규정 위반행위로 될 수 있다. 여기에는 선수생물려권(ABP)사건도 포함된다.

- 회피

선수가 통지를 받고 도핑검사장소에 가지 않거나 선수가 검사를 거절하거나 충분한 시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이다.

규약의 내용에 따라 선수가 시료수집을 회피, 거절 또는 실패하게 하는 경우 반도핑규정위반행위로 될 수 있다.

선수는 감독이나 부모들이 도핑검사에 응하지 말라고 해도 시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선수는 책임 있는 당사자이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

- 행처실패

선수가 자기가 밝힌 장소에 없거나 60분시간정보에 밝힌 시간에 검사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와 제때에 행처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미완성 또는 틀린 행처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이다.

규약의 내용에 따라 12개월동안에 선수가 3번의 행처보고 또는 자료제출실패를 범한 경우 반도핑규정위반행위로 될 수 있다.

기본검사명단에 있는 선수들은 경기외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를 밝힌 행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통간

선수나 선수보장성원이 소송과정을 포함하여 도핑검사과정을 방해하는 경우이다.

규약의 내용에 따라 선수나 기타 성원이 도핑검사의 임의의 부분에 통간을 부리거나 통간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반도핑규정위반행위로 될수 있다. 여기에는 증거위조행위나 시료병에 오줌이 아닌 다른 액체를 넣는 행위도 포함된다.

- 소유

선수나 선수보장성원이 금지된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다.

규약의 내용에 따라 선수나 선수보장성원이 금지 물질이나 금지방법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반도핑규정 위반행위로 될수 있다.

- 부정거래

선수나 선수보장성원이 금지된 물질을 취급, 운반, 판매 또는 판매를 시도하는 경우이다.

규약의 내용에 따라 선수나 기타 성원이 금지물질이나 방법을 부정거래하거나 부정거래를 시도하는 경우 반도핑규정위반행위로 될수 있다.

- 선수에게 적용

선수나 선수보장성원이 금지물질을 선수에게 적용 또는 적용을 시도하는 경우이다.

규약의 내용에 따라 선수나 기타 성원이 임의의 금지된 물질이나 방법을 임의의 선수에게 적용하거나 적용을 시도하는 경우 반도핑 규정위반행위로 될 수 있다.

- 공모

선수나 선수보장성원이 임의의 방법으로 반도핑 규정위반행위를 감싸주거나 감싸주려고 시도하는 것 또는 반도핑 규정위반행위에 가담하는 경우이다.

규약의 내용에 따라 선수나 기타 성원이 도핑 행위를 협조, 조장, 방조, 사축, 공모, 비호하거나 그것을 시도하는 경우 반도핑 규정위반행위로 될 수 있다.

여기에는 선수가 시료제출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행위도 포함된다.

- 금지된 협력

선수나 선수보장성원이 자격박탈기간에 있는 선수보장성원과 일하거나 그의 방조 또는 봉사를 받으려 하는 경우이다.

규약의 내용에 따라 선수나 선수보장성원이 자격 박탈된 선수나 선수보장성원과 금지된 협력관계를 가지는 경우 반도핑 규정위반행위로 될 수 있다.

- 협박 및 보복

선수나 선수보장성원이 의심되는 도핑행위를 신고하는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보복하려고 시도하는 경우이다.

규약의 내용에 따라 해당 기관들에 신고하는것을 선수나 기타 성원들이 협박 및 보복하는 경우 반도핑 규정위반행위로 될수 있다.

어느것이 선수들에게 적용되는가?

- 11 가지가 다 선수들에게 해당된다.

선수들은 우에서 언급된것들중 한가지이상 위반하면 반도핑 규정위반행위로 될수 있다. 선수들이 명심해야 할 몇가지 중요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엄격한 책임원칙

선수는 자기몸에 금지물질이 어떻게 들어가든, 고의적인 속임수를 썼든 관계없이 자기몸에서 발견된 임의의 금지물질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선수가 의사로부터 약물을 처방받았든, 감독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먹을것을 지시받았든 그것에 금지물질이 들어있으면 선수는 존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존재로인한 반도핑 규정위반행위로 될수 있다.

아무때나 검사를 받는것

선수는 아무때나 도핑검사원이 진행하는 검사를 받아 시료를 제공해야 한다. 검사를 거절하는것은 회피로 인한 반도핑 규정위반행위로 된다.

선수가 시료수집과정에 의견을 가지고있다면 검사를 마친 다음 도핑검사양식에 임의의 의견을 밝힐수 있다. 선수가 시료수집과정이 정확히 진행되지 않

는다고 보고 시료제출을 거절한다고 해도 역시 선수는 반도핑 규정위반행위로 취급된다.

필요한 경우 치료약물허가를 신청하는것

선수는 약물(의사가 처방하였다고 해도)을 사용하기 전에 그 활성성분들을 금지목록에서 확인해야 한다. 만일 그중 임의의 성분이 금지목록에 있으면 선수는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치료약물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선수들은 자기의 민족반도핑조직이나 국제련맹에 치료약물허가를 신청할수 있다. 금지물질을 함유하고있는 약품을 사용하면 사용에 의한 반도핑 규정위반행위로 될수 있다.

영양보충제를 조심하는것

보충제사용과 관련한 위험성이 있다. 보충제에는 금지물질로 되여있는 성분들이 들어있을수 있으며 때때로 제조과정에 금지물질에 의해 오염될수도 있다.

선수가 영양보충제를 선택하는 경우 제품의 이름을 기억하고 구입한 증거문건(령수증)을 보관하며 그 보충제를 적은 량 보관하여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는 경우 오염에 대해 검사할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나 엄격한 책임원칙이 있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선수가 비록 고의적인 속임수를 쓰지 않았어도 여전히 반도핑 규정위반행위로 될수 있다.

행처자료제출

선수가 기본검사대상에 들어간 경우 그들은 행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행처자료를 제출해야 검사원들이 검사하기 위해 선수를 찾을수 있다.

기본검사대상에 들어간 선수들은 매일 60분시간자료에 밝힌 시간에 검사를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수가 60분시간자료에 밝힌 장소에 없으면 행처보고실패(12개월동안에 3번 나타나면)에 의한 반도핑 규정위반행위로 될수 있다.

- 7 가지가 감독이나 의사, 기타 선수보장성원에게 적용된다.

- 롱간
- 소유
- 부정거래
- 선수에게 적용
- 공모
- 금지된 협력
- 협박 또는 보복

실례를 통한 배운 지식의 다지기

- 선수 그가 국제련맹으로부터 자기 시료에서 검사양성이 나왔다는 통지를 받은 이야기가 있다.

경기후 선수 그는 도핑검사장소에 가서 오줌시료를 제출하였다. 시료는 금지목록에 올라있는 모든 경우에 금지된 물질인 푸로세미드에 의한 검사양성으로 판명되었다.

선수 그는 자기시료의 양성결과에 대해 놀라워 하였다. 선수는 경기하기 한 달전에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의사의 지시하에 사용하였다. 또한 약물에 푸로세미드가 들어있었지만 선수 그는 의사가 처방한 약물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리라고 생각지 못하였던 것이다. 지어 선수는 도핑검사양식에 그 약물을 밝히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금지물질이 들어있는 처방약물을 사용하기 전에 선수 그는 자기의 반도핑조직에 치료약물사용허가를 신청하고 승인된 신청서를 가지고 있어야 했다.

선수 그는 실망하게 되였다. 그가 의사의 지시대로 약물을 사용했다고 해도 자기몸에 들어간 그 어떤 물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결국 잘못을 범한 것이였다.

그래서 검사양성으로 통지된 후 소급적인 치료약물사용허가를 신청하였지만 국제련맹은 그가 높은급선수이며 경험이 많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부결하였다.

이 실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것을 알수 있다.

· 금지물질(또는 그 대사체나 표식자)이 선수의 오줌이나 혈액속에서 발견되기만 하면 그 금지물질을 고의적으로 사용하였든, 비고의적으로 사용하였든 그것은 반도핑규정위반행위로 된다.

· 선수는 그것이 자기몸에 어떻게 들어갔든, 임의의 고의적인 속임수를 썼든 관계없이 자기몸에서 발견된 그 어떤 물질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이것이 바로 엄격한 책임원칙임)

· 선수들은 항상 금지목록에서 약물을 확인해보고 의사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선수들은 의사에게 자신이 반도핑규정과 금지목록을 준수해야 한다는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감독들과 부모들도 선수를 도울수 있다.

· 결국 선수들은 필요한 경우 금지물질이 들어있는 임의의 물질을 사용하기 전에 의사의 처방이라고 해도 치료약물사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 선수 ㄴ가 회피에 해당한 반도핑규정위반으로 된 이야기가 있다.

선수 ㄴ는 밤에 중요한 경기대회준비를 위해 팀에서 준비운동을 하고있었다. 그는 도핑검사원과 감시원이 자기 감독에게로 다가가는것을 보았다. 검사원들은 여기에 누군가를 검사하려고 왔다. 혹시 그게 나라면 …

선수 ㄴ는 갑자기 긴장되었다. 전날밤 연회때 그는 칸나비스를 사용하였던 것이다.

속히 결심하고 선수 ㄴ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훈련장에서 채빨리 빠져나왔다. 2일후 그는 민족반도핑조직으로부터 시료수집회피에 해당한 반도핑규정위반행위로 될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 실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것을 알수 있다.

검사에서 빠지는 것은 회피에 해당한 반도핑 규정 위반 행위로 될 수 있다.

다음의 이야기를 통해 누가 반도핑 규정 위반처벌을 받게 되는가를 결정해보자.

선수 Ⓜ는 기본검사대상선수로서 처음 행처정보를 입력할 때 흥분되었다.

그는 이 특정한 선수집단에 들어가게 된 영예감을 느꼈다. 그는 행처정보를 제출하여 경기외검사에 참가해야 하며 자기가 있을 수 있는 60 분 시간정보를 매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첫 행처정보를 제출한 후에 갱신된 훈련계획을 받았다. 계획이 변하여 선수 Ⓜ에게는 자기 행처를 갱신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다행히도 그의 감독이 자기의 요구에 따라 훈련이 변경되었다고 생각하고 모든 선수들의 행처정보를 갱신해주겠다고 하였다.

몇 주일 후 해외 훈련 기간에 선수 Ⓜ는 반도핑 조직으로부터 검사에 빠졌다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다. 그는 생각이 복잡했다. 자기의 감독이 행처정보를 갱신하지 못했는가? 이것이 자기의 실수이겠는가 아니면 감독의 잘못인가?

선수는 자기의 행처자료를 책임져야 한다. 감독이 자료를 갱신할 것을 약속하였더라도 선수는 자료의 수정과 정확성을 책임져야 하며 그 선수만 행처 실패에 의한 반도핑 규정 위반 행위로 될 수 있다.

제 3 과

처 벌

- 존재와 사용, 소유일 때

처벌은 어느 부류의 금지물질을 사용하였고 선수의 시료에서 어떤 금지물질이 발견되었으며 어떤 금지물질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특정 물질(일반적으로 처방없이 살수 있는 약품이나 오염된 보충제에서 보다 쉽게 발견되며 운동능력증강이 아닌 다른 목적에 더 잘 리용됨)인 경우 기준 처벌기간은 2년이나 반도핑조직이 고의적이라는것을 립증할수 있는 경우는 달라지며 이때는 4년이다.

비특정금지물질인 경우 기준처벌은 4년이나 선수가 비고의적이라는것을 립증하는 경우는 2년으로 된다.

《고의적이다.》라는 말의 의미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선수가 금지물질을 우연히(고의적으로 속이려고 하지 않음) 사용했다고 해도 해당 제품의 위험성을 무시하고 그런 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한 그 무엇도 하지 않으면 여전히 고의적인것으로 분류할수 있다.

일반적인 규정대로 하면 선수는 그 물질이 자기 몸에 어떻게 들어갔는가 즉 그 물질의 원천을 증명해야 한다. 이것은 자기의 행동이 비고의적이였다는 것을 립증하는것으로 된다. 실례로 금지물질이 오염된 보충제에서 나왔다고 주장한다면 선수가 사용한 보충제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수 있다.

선수가 보충제를 사용하여 검사에서 양성으로 되는 경우 분석 할수 있도록 적은 량을 보관해야 한다는것을 권고한다.

선수들이 금지물질을 고의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것을 립증하는것은 매우 힘들며 대다수 경우에 비특정물질에 의한 검사양성으로 나온 선수들은 여전히 4년간의 자격박탈을 받게 된다. 즉 4년간 체육활동에 참가하지 못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선수의 실수정도에 따라 자격박탈기간은 경고로까지 감소될 수 있다.

만일 위반행위가 람용물질(규약에서 정의한대로 함)과 관련되고 선수가 그것을 경기외기간에 사용하였으며 운동능력과 무관계하였다는 것을 입증할수 있다면 자격박탈기간은 3 개월이다(또한 선수가 자기의 반도핑조직이 승인한 람용물질치료계획을 완료하면 1 개월로 줄일수 있음).

- 통간과 회피/거절일 때

고의적으로 속였다면 자격박탈기간은 4 년이다.

만일 선수가 시료제출의 실패가 고의적이 아니라는것을 입증할수 있다면 자격박탈기간은 2 년이다.

처벌감소가 성립되는 타당한 협의조건이 있다면 처벌은 2년과 4년사이에서 받게 된다.

행처실패일 때 자격박탈기간은 선수의 실수정도에 따라 1 년과 2 년사이이다.

공모하였을 때 자격박탈기간은 최소 2 년부터 종신까지이다.

금지된 협력을 하였을 때 자격박탈기간은 2 년이지만 실수정도와 사건의 정황에 따라 1 년으로 감소될수 있다.

협박 또는 보복일 때 자격박탈기간은 위반의 염중성정도에 따라 최소 2년부터 종신까지이다.

- 부정거래, 적용일 때

자격박탈기간은 최소 4 년부터 종신까지이다. 금지물질이나 방법의 적용이 보호대상(규약에서 정의함)에 대한것이면 매우 염중한 위반으로 본다. 또한 보호대상에게 감독이나 의료전문가와 같은 선수보장성원이 특정물질이 아닌 비특정물질을 적용하는 경우 그 선수보장성원에게 종신박탈처벌을 주어야 한다.

또한 국가법위반으로 되는 임의의 엄중한 위반들은 해당 기관들에 보고하여야 한다.

- 주의를 돌려야 할 중요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 반복적인 반도핑 규정위반행위 또는 여러가지 물질들의 존재에 대하여서는 처벌이 증가될수 있다.
- 경기대회기간에 발생하거나 대회와 관련된 반도핑 규정위반은 경기결과와 점수, 메달, 상장의 박탈 및 몰수로 이어질수 있다. 만일 선수가 자기의 행동에서 실수나 부주의가 없었다는것을 립증할수 있다면(그 반도핑 규정위반이 다른 경기들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보면) 해당 경기의 결과만 박탈할수 있다.
- 집단종목에 속한 선수들의 반도핑 규정위반행위는 팀전체에 대한 제재에로 이어질수 있다. 실례로 팀전체가 한 경기 또는 대회에서 얻은 점수가 삭제되거나 잃거나 결과를 박탈당하는 등 기타 처벌이 가해진다.

제 4 과

맺는 말

강의를 마감하면서 선수가 알아야 할것이 있다.

- 반도핑 규정 위반행위는 선수들의 건강과 깨끗하고 공정한 경기를 위한 선수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행동과 대립된다.
- 기쁨과 즐거움, 공정한 경기와 명예, 건강과 규정의식 등 깨끗한 체육을 위한 품성을 키워나가자면 반도핑 규정 위반에 대해 알아야 한다.

부주의에 의한 도핑행위(즉 우발적인 도핑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 어떤 반도핑 규정 위반이 선수에게 해당되며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알아야 한다.
- 항상 무엇이든 사용 또는 적용전에 금지목록에 있는 약품 및 적용방법과 대조해보아야 한다.
- 보충제사용과 관련한 위험성을 명심하고 항상 사용전에 철저한 확인을 진행하여야 한다.
- 선수들은 금지 물질이나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필요하다면 치료약물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 선수들은 자기 자신의 행처자료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자기 몸에서 발견되는 임의의 물질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